

알 리 는 말 씀

1. 감정의뢰 물건 중 감정이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보수를 납입하고 감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 법인에서 구비한 자료 또는 특별한 용역이 소요된 실비 상당액은 감정의뢰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보수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와 실비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당 법인은 감정의뢰 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 착수금으로 받으며, 당 법인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경비를 착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 후 감정평가를 철회하거나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릅니다.
 - 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감정의뢰 시 납입한 착수금을 환급함.
 - 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철회하거나 감정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착수금의 2분의 1은 당 법인에 귀속됨.
 - 다. 현장조사 후에는 감정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함.
 - 라. 감정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4. 감정보수는 당 법인의 감정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는 감정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법령의 규정이나 당 법인과 의뢰인과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을 의뢰한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감정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 의뢰 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제3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목을 위반한 경우 당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가. 당 법인의 승낙 없이 감정서를 복사, 개작 또는 전제 또는 감정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나. 감정의뢰 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여야 하며 동의 없는 감정의뢰로 인한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전면 감정평가의뢰서 상에 개인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감정평가서의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보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를 착수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 법인 소재지 관할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니다.
9. 당 법인과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중앙감정평가법인